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25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19,806,286원 및 그 중 18,846,545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8. 5. 9.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01832), D 주식회사는 2019. 7.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C에게 위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그 즈음 C에게 도달한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21. 7. 8. 위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위 지분에 관하여 2021. 10. 13. 피고 앞으로 2021. 9.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21. 10.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건물의 건축주는 E이었고 그 사용승인일은 1994. 5. 11.인 사실, E은 2008. 7.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은 처(상속지분 3/15) 및 원고와 C를 포함한 자녀 6명(상속지분 각 2/15)인 사실, 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물론 E의 사망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C는 위 건물에 대한 상속지분 2/15를 위 소유권보존등기일자와 같은 일자에 경료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같은 날짜에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E의 사망으로 인하여 C가 상속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은 C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 당시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그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이음이 추인되

므로 2021.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양수금 채권의

채무자인 C가 그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 상속지분 2/15 지분에 관하여 2021.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C가 교통사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위와 같은 명목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료를 모두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가 위 증여 당시 이것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디모데

별지